

지급하는 경비)를 원장이 정한 직책에 따라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직책 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1장 입소·이용료

제117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시설의 입소”라 함은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에 입소대상자로서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118조 (입소대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에 한한다.

제119조 (입소의 제한) 원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해당 어르신은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① 전염성 질환자.
- ② 기타 다른 노인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어르신.

제120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시설 설치 신고 시 규정한 인원으로 유지토록 한다.

- ① 입소정원은 60인이며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대상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 ② 모집방법: 홈페이지, 대중매체, 전단지, 각 기관방문 홍보, 지역주민 연계 홍보활동 등

제119조 (입소계약)

- ①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상위 또는 하위로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② 계약의 목적: 갑”은 “을”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을”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 ③ 월 입소이용료: 폴꽃세상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등급을 받아 폴꽃세상과 당 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등급별 금액 기준에 의하고 비급여(의료비,특별간식비,이미용비,장거리유류대)로 발생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인은 거주 노인의 퇴소 및 사망 시 신원을 인수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 및 비품에 대하여 거주 노인으로 인해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거주노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 ⑤ 계약의 해제 : “갑”은 “을”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른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 1)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을”이 “갑”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갑” “을”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갑”이 인정했을 때
 -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 5) “을”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6)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해야 한다.
- 7)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갑”이 정하는 계약8)해제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 9) “을”은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갑”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을”이 계약 해제계를 “갑”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갑”은 “을”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121조(비용변경 및 절차)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기초수급대상자(의료급여대상자 포함)의 결격사유로 인해 본인부담 및 비용변경이 발생한 경우 시설에서는 이를 대상자의 가족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이 내용을 갑 과 을이 입회하여 확인 후 입소이용료를 변경 부담토록 한다.

제122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시설에서는 거주 노인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병원이용서비스,외출서비스,외식지원서비스,목욕서비스,종교활동 지원서비스,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통으로 지원하나 병원입원 시 소요되는 소모품비(물티슈,위생장갑,개별간식,기저귀 등)은 본인부담으로하며,그 외에 발생 비용(비급여항목 포함)에 대하여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3조(별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와 그 비용)

①어르신 개인의 심리(배회,폭력,치매 등)상태 혹은 단체 부적응으로 인해 적응을 위한 1인실 기거 혹은 기타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은 지역사회자원연계,직원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노력 등을 하여야 한다.

②건강상의 문제나 연하관란,욕창 등의 질환으로 인한 영양상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의료서비스나 영양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체식으로 연식,다진식 등은 시설에서 제공하나 그 외의 보조제인 연하곤란환자들을 위한 점도증진제,또는 열량보충제 등의 부담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실비대상자를 제외한 의료보호1종 대상자에 한하여 병원입원 시 식대를 제외한 모든 부담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입소대상자가 원하여 1인실 혹은 2인실 사용 시 시설이 정한 특별병실 사용료를 대상자나 그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4조(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와 처리방법)

①어르신들의 의사를 우선,원칙으로 한다.(치매환자 및 의사능력 불능자는 담당간호사의 요청에 의해 시설장이 결정한다)

②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이 필요시 담당자가 보호자협의를 거쳐 시설장에게 보고한 후 입원 조치한다

③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어르신과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진료와 입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치료방법이 부적절할 시 시설에서는 어르신의 의료서비스에 적극 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병인이 제공되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권장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 시켜야하며 만약 간병인이 제공되는 않을 시에는 보호자 부담으로 유급간병인을 둘 수 있다.

④입원 후 시설의 담당직원은 입원어르신을 방치하지 않고 수시로 병문안하여 환자의 상태나 그 결과를 입원어르신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제125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갑”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갑”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5.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6. “을”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7, 이외의 설치,비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 및 이용할때

제12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①시설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및 전문인보험에 가입한다.
- ②어르신들은 골다공증,피부약화로 쉽게 골절 또는 멍이 들수 있으므로 스스로 실족하거나 부딪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
- ③어르신을 모시다가 선의의 실수 또는 불가항력 상황에 의한 부상,자해행위등으로 인한 부상등
- ④천재지변, 기타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자해,자살,탈주,본인의 가설,병사,도난 혹은 외출중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 및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장 교육, 훈련 및 직원평가

제127조 (교육의 의무) 직원은 시설에서 직원교육훈련운영지침(별표 16)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제반 교육을 성실히 참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128조 (교육의 평가) 시설은 교육내용에 대하여 전형을 실시하고 출석률, 교육성적 등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9조 (안전 보건교육)

- ① 시설은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시설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근로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제130조(직원의 평가)시설은 직원의 인사 및 제반 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승진 및 급여·포상에 반영을 한다.(평가기준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13장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및 개인정보교육

제131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시설장, 상급자, 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2조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외부 인사 초빙 및 내부교육실시)

제133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① 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